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0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 박홍근・박홍배・이수진

김성환 · 정준호 · 진성준

송옥주・고민정・김 윤

이학영 · 서영석 · 윤종군

민형배 · 한정애 · 박수현

주철현 • 박해철 • 강준현

전진숙 • 박희승 • 정을호

박선원 • 양부남 • 조인철

황명선 • 문금주 • 한준호

허 영 · 오세희 · 전용기

김 현·장종태·남인순

이광희 · 김현정 · 정성호

정일영 • 박정현 • 최민희

유후덕 • 민병덕 의원

(41일)

제안이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파행적 대결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음. 현행법상 명확한 국회법을 두지 않고 합의제 모델인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원 구성을 완성하는 전통을 지켜온 것도 협의를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현행 국회법의 미비에서 비롯되어 원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2년마다 반복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불신이 커지고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뒷전이 되는 등 국가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지대함. 따라서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보다 획기적이고 본질적인 대안은 미국과 같이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역시 4년제로 전환하는 것임.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다수당 독식 방식으로 전환하면임기 동안 원내 정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회의원 4년 임기동안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며 다음 선거에서 이전 국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는 효과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안정적 양당제의 오랜 전통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는 원내 제1당 단독의 과반 의석 확보를 매 선거마다 예정하기 어려운 바, 다수당 독식 방식 전환은 국회 개혁의 중장기적 과제로 두 고 다음과 같이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의장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 섭단체("제1교섭단체"라 한다) 몫으로 명문화함(안 제15조제1항 신 설).
- 나.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 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져가 도록 하며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함 (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제45조).
- 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한 규정을 보완하여 격년 6월 5일까지는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는 해당 상임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며, 6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장 등의 선 출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제48조).
- 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해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심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될 수없도록 개편, 원 구성 지연의 소지를 사전 차단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등).
- 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소관 상임위원회는 현행 180일에 서 6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현행 330일에

서 90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85조의2).

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불출석 당사자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첫 임시회를 그 임기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한 명단의 1인을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소속 의원 수가 동일한 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각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의장이 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일 에 제2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한다.

제18조제2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법률안의 입안, 체계·형식과 자구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 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담기구를 둔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사법위원회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일"을 "7일"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본회의"를 "상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명 단의 1인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 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그 임기만료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

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상임위원장등의 배분 기준 및 추천 절차) ① 제41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경우에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장등"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의원 수 중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 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 정수(整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되지 아니한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값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등의 수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장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등의 명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소속 위원 중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상임위원장등의 명단이 교섭단체 간에 중복될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부터 배정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동일한 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정한다.
- 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장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해당 교섭단체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44조제3항 단서 중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를 "제66조"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제4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단의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후단 중 "2일"을 "5일"로 하고,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를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소위원회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 조의2에서 같다)의 심사나 입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21 조제5항에 따른 법제전담기구(이하 "법제전담기구"라 한다)에 법률 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제57조의3으로 하고,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7조의3(종전의 제57조의2)제1항 본문 중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으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57조의2)제9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를 "제4항에 따라 바로 본회의"로 한다.

제57조의2(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검토) ① 제57조제7항에 따라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요구를 받은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그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검토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를 "법률안"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본문 중 "180일"을 "6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 본문 중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를 "위원회"로, "제3항 본문"을 "제3항"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6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 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를 "법률안"으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정당한 이유 없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6항의 형과 같다.

제130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사법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중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을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체 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대상"으로 한다.

- ②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사법위원회"로 한다.
- ③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한다.

제3조(안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임시회) ① ~ ③ (생 략) | 제5조(임시회) ① ~ ③ (현행과 |
| | 같음) |
| <u><신 설></u> | ④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
| |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
| | 경우에는 첫 임시회를 그 임기 |
| | 만료일 후 7일에 집회한다. 다 |
| | 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
| |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u>①</u> |
| <u><신 설></u> | 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
| |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 |
| | 출한 명단의 1인을 본회의에서 |
| | 선출한다. 단, 소속 의원 수가 |
| | 동일한 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
| | 때에는 각 명단을 제출할 수 |
| | <u>있다.</u> |
| <u>①</u> (생 략) |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
| ② <u>제1항</u> 에 따른 선거는 국회 | <u>③</u> 제2항 |
| 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 |
|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 | |
| 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 |
|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 |
|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 |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 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 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 ④ 제2항 |
|--------------------|
| <u> </u> |
| ગો૦ઢો |
| <u>제2항</u> |
| |
| |
| |
| |
| |
| |
| |
| 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
|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
|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
| 못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
| 후 첫 집회일에 제2항에 따른 |
| 선거를 실시한다. |
|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
| 직무대행) |
| |
| |
| |
| |
| |
| |
| |

- 1. (생략)
- 2. <u>제15조제2항</u>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 5. (생략)

제21조(국회사무처) ① ~ ④ (생 략)

<신 설>

- ⑤ (생략)
-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 2. 제15조제3항 |
| |
| |
| |
| |
| |
| |
| |
| 3. ~ 5. (현행과 같음) |
| 에21조(국회사무처) ① ~ ④ |
| (현행과 같음) |
| ⑤ 법률안의 입안, 체계ㆍ형식 |
| 과 자구의 검토 등 법제와 관 |
| 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 |
| 하여 국회사무처에 법제전담기 |
| 구를 둔다. |
|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
| <u>⑦</u> 제5항 및 제6항 |
| |
| |
| |
| |
| |
| |
| |
|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사. (생 략)

-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 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 17. (생략)
- ②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u>3일</u>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단서 신설>

| 제: | 37조 | :(싱 | 임유 | 비원 | 회와 | · 그 | 소관) | 1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2. <u>사법위원회</u>가. ~ 사. (현행과 같음)<삭 제>
 - 3. ~ 1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1조의2제3 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제출 된 명단의 1인을 각 상임위원 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 선되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

| (3) | | | | | |
|-----|---------|---|----|----------|------------|
| | | | | <u>7</u> | <u>]</u>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 ユ | 임기 | 만료 | 일 |

④ (생략)

⑤ 상임위원장은 <u>본회의</u>의 동 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 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후 첫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제2 항에 따라 선출한다.

④ (현행과 같음)

| ⑤상임위원호 | <u>]</u> |
|--------|----------|
| | |
| | |
| | |
| | |

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 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 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의2(상임위원장등의 배분 기준 및 추천 절차) ① 제41조 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경우 에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상 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 장(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 장등"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의원 수 중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 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 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 정수(整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되지 아 니한 상임위원장등의 수는 제1 항에 따라 산출된 값의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교섭 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 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 교 섭단체에 배분된 상임위원장등 의 수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장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등의 명단 은 해당 상임위원회(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경우에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소속 위원 중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상임 위원장등의 명단이 교섭단체 간에 중복될 경우에는 소속 의 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추천 부터 배정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동일한 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

여 정한다.

-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생략)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u>제86</u> 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 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 ⑥ (생 략)
-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 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 다.

| 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 |
|------------------------|
| 게 상임위원장등의 명단을 제 |
| 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해 |
| 당 교섭단체 몫의 상임위원장 |
|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 |
| 과 같음) |
| ③ |
| |
| 제66조- |
| |
| |
| |
| |
| <u>.</u>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 ~ ③ (현행과 같음) |
| 4 |
| <u>제41조의2제3항 및 제4항</u> |
| 에 따라 제출된 명단의 1인을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기 |
| 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
|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이 |

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⑤ (생략)
-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 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 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 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 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 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 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⑥ (생 조략)

| (5) (현행과 같음) |
|--|
| 6 |
| |
| N o -J |
| <u>제6항</u> |
| 레 40 코 / 이 이 이 이 거 거 거 시 (1) |
| 세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 |
| |
| |
| |
| |
| 5일 |
| <u> </u> |
| |
| |
| |
| |
| |
| 임 |
| 므 <u>기만료일 후 첫 집회일부터 5</u> |
| 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선임하 |
| |
| <u>여야 한다</u> . 세57조(소위원회) ① ~ ⑥ (현행 |
| 과 같음) |
| TEDI |

<신 설>

⑦ ~ ⑨ (생 략)

<신 설>

- ① 소위원회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같다)의 심 사나 입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21조제5항에 따른 법제전담기구(이하 "법제전담 기구"라 한다)에 법률안의 체 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검토 를 요구할 수 있다.
- <u>⑧</u> ~ <u>⑩</u>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 제57조의2(법률안의 체계·형식 과 자구 검토) ① 제57조제7항 에 따라 법률안의 체계·형식 과 자구에 관한 검토 요구를 받은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그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제전담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검토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15일의 범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 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 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 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 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 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 ② ~ ⑧ (생 략)
-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 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 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 위에서 검토기간을 한 차례 연 |
|---|
| <u>장할 수 있다.</u> |
| <u>제57조의3(</u> 안건조정위원회) ① |
| |
| <u>기금운용계</u> |
| 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
| 액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제4항에 따라 바로 본회의 |
| |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 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 료한다. ⑩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⑨ (생 략) ⑪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 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

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 ①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 <u>삭 제></u> |
|--|
| |
|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
| |
| |
| |
| |
| |
| |
| |
| |
| |
| |

4. (생략)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 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 1. 2. (생략)
- ② · ③ (생 략)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u>안건(체계·</u>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 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 4.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
|-------------------------------|
| 법률 |
| <u>안</u> |
| |
| |
| |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
| <u>안건</u> |
| |
| |
| |
| |
| |
| |
| |
| |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 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② (생략)
-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 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 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 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 다.
-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 |

| ② (현행과 같음) |
|-------------|
| 3 |
| |
| 60일 |
| <단서 삭제> |
| |
| |
| |
| |
| |
| |
| |

-----제3항-----

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 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 바로 | 본회의에 부의된 |
|----------|----------------------|
| . | <u><단서 삭제></u> |

<삭 제>

| 6 | 제4형 | } | | |
|---|-----|----|------|--|
| | | | | |
| | | | | |
| | 30히 | 이내 | | |

되어야 한다. ⑦ (생 략)

8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 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 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 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

| ⑦ (현행과 같음) |
|-------------------|
| 8 |
| |
| 제2항부터 |
|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
| |
|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
| 자동 부의 등) ① (현행과 같 |
| |
| <u></u> 수) |
| ② |
| |
| <u>법률안</u> |
| |
| |
| |
| |
| |
| |
| <u>.</u>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 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 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수 있다.
-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

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 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 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 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 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 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7 구) ①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 기 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u>법제사법위원회</u>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 핵소추안을 <u>법제사법위원회</u>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단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
|--------------------|
| 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 |
|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
|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
| 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⑦ 정당한 이유 없이 국무총리, |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 |
| 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 |
| <u>6항의 형과 같다.</u> |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
| |
| |
| |
| <u>사법위원회</u> |
| |
| ② |
| <u>사법위원회</u> |
| |
| |
| |
| |
| |
| |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u>법제사법위원회</u>가 제 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 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 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u>법제사법 위원장</u>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생략)

| • |
|--------------------|
| ③ (현행과 같음) |
|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
| 조사) ① <u>사법위원회</u>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 |
| 과) ① |
| |
| 사법위 |
| <u>원장</u> |
| |
| |
| <u>.</u> |
| ② (현행과 같음) |